

의안번호	2210667
의 퇴 인	문진석의원
회 답 일	2025. 8. 5.
추 계 번호	25B308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u>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u>,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지 아니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1. 「도로법」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39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차량·의무 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현행법¹⁾은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등과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별로 감면율을 각각 달리 적용(20 ~ 100%)하고 있음

[표 1]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및 감면율

항 목			감면율	목 적
면제	군작전용차량, 경찰작전용차량, 구급·구호·소방차량, 교통단속용차량, 유료도로건설·유지관리차량, 긴급물류수송차량, 긴급통행제한차량		100%	긴급차량지원
	독립유공자			교통약자배려
	국가유공자	1~5급		
	5·18 부상자	1~5급		
	설날·추석 등			국가정책지원
감면	국가유공자	6~7급	50%	교통약자배려
	5·18 부상자	6~14급	50%	
	장애인		50%	
	고엽제 환자	후유증환자	50%	
		후유의증환자	50%	
	경차(1,000cc 미만)		50%	국가정책지원
	출퇴근 승용·승합·화물자동차		20%, 50%	
	화물자동차·건설기계차량(심야할인)		30%, 50%	
전기·수소전기자동차		20%, 30%, 40%		

자료: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제3항

- 1) 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유료도로는 크게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민자고속도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로 나뉘며, 전국 유료도로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전국 유료도로 현황(2024년 기준)

재정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	지자체 등 관리도로
36개 노선	22개 노선	34개 구간
4,276km	883.0km	223.7km

주 1. 남산1호 터널, 3호터널은 혼잡통행료 징수구간(도시교통정비촉진법)

2. 노선합산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관리하는 노선 간에 중복 발생에 따라 합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국토교통부

- 개정안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추가하는 것으로, 시외버스운송사업 차량에 대한 국가의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액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유료도로 통행료 수입 감소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통행료 현황, 통행료 감면을 및 국가의 지원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나, 개정안은 통행료 감면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이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 현행법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하여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정고속도로 및 지자체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및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한 사례는 없으며, 민자 고속도로에 대하여는 각 도로별 실시협약²⁾에 따라 일부 통행료 감면액에 대하여 국가가 재정지원을 한 사례는 있음
- ※ ‘고속도로(재정·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 감면 현황’은 참고자료 참조

2)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민자도로(이하 “민자도로”라 한다)의 경우 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행료 감면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실시협약에 따라 지원한다.

[표 3]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에 대한 국고지원 현황(2020~2024년)

(단위: 백만원)

구분 (유료도로관리권자)		2020	2021	2022	2023	2024
재정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국가의 재정지원 없음				
지자체 유료도로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재정지원 없음				
민자 고속 도로 (관리운영주체)	명절 면제	29,329	10,591	—	14,058	24,448
	코로나19 기간 노선버스, 의료지원차량 면제 등	8,918	11,668	12,769	16,451	16,654

주: 당해연도 지원금액은 전년도 면제 금액에 대한 지원임

자료: 국토교통부

- 참고로, 시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통행료 현황과 관련하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2023년 기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유료도로 통행료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사례가 있음³⁾

[표 4]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유료도로 통행료 현황(2023년 기준)

(단위: 만원, 대, 만원/대)

구분	연간 총 통행료(A)	실제 가동차량 ¹⁾ 대수(B)	연간 가동차량 1대당 통행료(A/B)
시외일반·직행버스	3,541,285	3,889	911
시외고속버스	1,564,227	1,544	1,013
합 계	5,105,486	5,433	940

주: 1) 가동차량: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등록한 차량에서 연간 운송사업용으로 가동(운행)된 차량의 수

2) 2024년 9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실시한 '시외버스운송사업 경영개선 방안 연구(동남회계 법인 수행)'에 따른 수치임

자료: 국토교통부

3) 동 조사에서는 전체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를 조사하여 재정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지자체 유료도로 등 유료도로 종류별 통행료는 알 수 없음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

[참고자료]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현황

[참고표 1]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통행료 총수입	4,117,494	3,958,916	4,174,100	4,202,652	4,292,578	4,368,104	
감면금액 합계	397,439	374,768	346,190	425,868	490,029	482,535	
소계	113,364	94,973	53,414	121,928	167,927	145,123	
면제	군·경 작전차량	4,561	2,833	2,280	4,484	6,403	6,143
	국가유공자 등	1,614	1,328	1,279	1,235	1,264	1,239
	유지보수차량	9,172	9,739	7,442	6,293	6,403	6,294
	교통단속차량	1,815	1,626	1,691	1,753	2,924	3,223
	구호·구급·소방	1,675	1,654	2,116	2,060	2,076	1,934
	간접 통행제한·물류수송	19	90	34	1,291	750	6
	명절(설·추석)	94,508	46,926	—	64,552	128,050	126,285
	노선버스(코로나)	—	30,777	38,572	40,260	20,057	—
소계	284,075	279,795	292,776	303,940	322,102	337,412	
할인	경 차	84,016	78,328	78,225	78,245	78,777	78,401
	국가유공자 등	4,074	3,551	3,448	3,356	3,264	3,072
	장애인	34,406	30,219	29,797	29,716	29,583	28,918
	출퇴근	66,039	67,242	69,567	70,137	73,705	74,772
	화물차 심야할인	87,798	90,638	95,876	92,790	92,761	93,271
	전기차·수소차	5,778	9,102	15,555	29,343	43,450	58,161
	비상자동제동장치	1,964	715	308	353	562	816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표 2]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통행료 총수입	1,516,318	1,357,617	1,399,388	1,506,719	1,607,287	1,627,264	
감면금액 합계	113,675	99,714	95,343	129,032	154,418	154,064	
소계	35,804	27,554	15,468	38,885	56,466	50,295	
면제	군·경 작전차량	1,655	1,358	1,375	1,810	1,870	1,497
	국가유공자 등	605	528	436	425	380	319
	유지보수차량	1,770	1,816	1,582	1,655	1,539	1,418
	교통단속차량	413	385	518	389	516	522
	구호·구급·소방	551	502	624	666	537	512
	긴급통행제한·물류수송	3	—	—	254	1	—
	명절(설·추석)	30,807	14,572	—	21,021	42,194	46,026
	노선버스(코로나)	—	8,393	10,933	12,665	9,429	—
소계	77,871	72,160	79,875	90,147	97,952	103,770	
할인	경 차	37,296	34,056	34,413	34,868	36,344	36,131
	국가유공자 등	889	780	721	714	661	609
	장애인	9,894	8,729	8,768	9,833	9,365	9,067
	출퇴근	47	45	47	53	34	34
	화물차 심야할인	25,534	24,204	29,439	31,453	30,031	30,520
	전기차·수소차	2,153	3,743	6,248	12,922	20,459	26,407
	비상자동제동장치	2,057	603	239	304	1,058	1,002

자료: 국토교통부